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2010033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2-07-2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6-13

사쿠사쿠 정보공개서

(주)계미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계 미 락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44-1

전화번호

031-665-4929

홈페이지

www.sakusaku.co.kr

팩스번호

031-665-4928

이메일

gmr4949@naver.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5
2. 특수 관계인의 일반정보	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5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5.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6
7.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7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7

II. 가맹본부의 사쿠사쿠 가맹사업 현황

1. 사쿠사쿠를 시작한 날	8
2. 사쿠사쿠 연혁	8
3. 사쿠사쿠 업종	8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8
5. 최근 3년간 사쿠사쿠 가맹점 수	9
6. 사쿠사쿠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9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9
8. 사쿠사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11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11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11. 가맹금 예치	11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12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13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13
3. 형(刑)의 선고	13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
2. 영업 중의 부담	17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19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1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22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23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24
5.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26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26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29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31
9. 광고 및 판촉 활동	32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33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3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34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35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36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6
3. 경영활동 자문	36
4. 신용 제공 등 내역	37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37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38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8
3. 교육·훈련의 주체	38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3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39
2.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9
3.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의 연간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39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0
별첨[2] 필수설비 리스트	48
별첨[3] 원·부재료 리스트	50
별첨[4] 메뉴 및 가격	52
별첨[5] 사쿠사쿠 가맹점 리스트	53
별첨[6] 가맹금 예치 신청서	54
별첨[7]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55
별첨[8]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가맹점사업자 용/ 가맹본부 용)	56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 계미락	사쿠사쿠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44-1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4.11.10	2004.11.16	김학순	031-665-4929	031-665-4928
	법인등록번호	110111-3114222	사업자등록번호		215-86-6374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학순 / (주)계미락	사쿠사쿠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44-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학순	031-665-4929	031-665-492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사쿠사쿠]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사쿠사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치킨과 Good Time을 추구하는 바삭바삭 명품치킨 전문브랜드입니다. 사쿠사쿠는 '바삭바삭'의성어의 일본어로서 바삭한 치킨을 나타냅니다.
상 호	사쿠사쿠 000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236680000
그밖의 영업표지		서비스표 등록번호: 400817130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716,554	2,707,025	2,009,529	3,167,195	151,004	87,919
2022년	5,364,328	3,305,940	2,058,388	3,405,307	174,591	48,859
2023년	5,408,683	3,477,963	1,930,720	3,623,036	281,777	77,493

※ 상기의 근거자료로써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별첨 1]하였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임원	김학순	대표이사	2005년 04월 ~ 현재	(주)계미락 대표	경영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의 표시 권한	2004.11.12 출원 2005.11.17 등록	출원 4120040024426	주식회사 계미락	2025.11.17
			등록 제41-0123668호		
	상표의 표시 권한	2004.11.12 출원 2005.11.16 등록	출원 4120040024427	주식회사 계미락	2025.11.16
			등록 제41-0123630호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사쿠사쿠] 가맹사업 현황

1. [사쿠사쿠] 를 시작한 날: 2012년 7 월 5 일

2. [사쿠사쿠] 연혁

가맹본부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 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계 미 락	사쿠사쿠	김학순	2012.07.05. ~ 2018.12.05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4
			2018.12.06. ~ 현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44-1

3. [사쿠사쿠]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사쿠사쿠	치킨	치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사쿠사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1	30	1	31	30	1	28	27	1
서울	-	-	-	-	-	-	-	-	-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4	23	1	23	22	1	21	20	1
강원	2	2	-	2	2	-	2	2	-
충북	1	1	-	1	1	-	-	-	-
충남	2	2	-	3	3	-	3	3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1	-	1	1	-	1	1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사쿠사쿠]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2	5	3	4	1	30
2022	30	2	1	1	3	30
2023	30	1	2	2	3	27

6. [사쿠사쿠]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사쿠사쿠]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 간 평 균 매출액	면 적 3.3㎡ 당	상 한	면 적 3.3㎡ 당	하 한	면 적 3.3㎡ 당	
전체	27	274,082	12,715	725,977	32,420	103,115	5,133	27개 산출
서울	-	-	-	-	-	-	-	
부산	1	-	-	-	-	-	-	2개 미만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20	306,137	14,347	725,977	32,420	139,322	5,693	-
강원	2	169,036	8,437	203,770	12,713	134,302	5,586	-
충북	-	-	-	-	-	-	-	-
충남	3	184,091	6,891	243,495	12,153	103,115	5,133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1	-	-	-	-	-	-	2개 미만
제주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추정비율 (3.2)]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의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부재료 등의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약 31% ~ 32%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재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가맹점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을 개시한 1개(경기 1개)의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한 연간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7개 가맹점의 연간평균 추정매출액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역별 가맹점 2개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계미락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사쿠사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사쿠사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7개	2,849일 (7년 9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당사에서 2023년에 사쿠사쿠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760	 (비공개)	-	
광고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판촉		(비공개)	5,397	 (비공개)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평택 우체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20-5	02-3443-7901

※ 가맹금 예치 신청서는 별첨[6]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맹금에 대한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즉시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계미락**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사쿠사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부분 및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입비	3,300	계약 즉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개점을 위한 일체의 본부지원에 대한 대가로 소멸되는 비용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해지의 경우, 반환시 위약금(20%)을 공제
교육비	2,200			교육지원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행사비	가맹점사업자 재량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 종료 시,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정산.
물품보증금	2,000	계약 즉시 예치계좌에 예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미납된 물품대금 등	
계약이행보증금	1,000		가맹계약기간동안 계약내용 불이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500
가입비	3,300
교육비	2,200
개점행사비	0
(현금)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 적 3.3㎡당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5,990				15평 기준



필수설비(정착물)	협력업체	6,340	422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해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21,450	1,43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시 일부지급 / 공사 완료 즉시 잔금 지급	공사 전 계약해지	창호, 덕트 등의 공사비 포함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협력업체	2,2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간판제작	협력업체	6,000		간판제작1일전	상품 미 공급 시	가맹점사업자 개별제작 불가
내장공사 감리비		없음		내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및 완료 시		가맹점사업자 개별 인테리어 공사 불가.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조언 후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대상자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종업원	제한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사쿠사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2] 필수설비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주) 계미락	1,000	가맹계약 갱신시	반환불가	가맹계약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 댓가	가맹계약 갱신하는 매 1년마다 본사에 지급
광고 월공동광고						해당사항 없음

분담금	비정기광고시		본사 50% 가맹점 50%	광고 시	광고 실시 후 반환불가		자세한 내용은 P 33 참고
	판촉분담금		협약 후 분담	판촉 시	행사 후 반환불가		
	교육훈련비		1,100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실시 후 반환불가		가맹점운영 규칙을 어긴 경우 발생 자세한 내용은 P39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6,000	변경간판 제작 전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POS 사용료		없음				
	지연이자	(주)계미락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점에 대한 회계 관리 및 재고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장운영상태 점검	점포운영수칙 준수 여부, 위생, 식자재관리, 레시피 준수 여부 등	·필요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



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쿠사쿠'의 권리, 의무관계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 문서로써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해지되어서 당사가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사쿠사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자세한 품목은 [별첨2], 원부재료 내역은 [별첨3]으로 첨부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사쿠사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사쿠사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사쿠사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4]로 첨부했습니다.

상품명(메뉴)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치킨류 12종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경고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사이드안주 9종			
탕 종류 3종			
그 외 사쿠사쿠에서 지정한 메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상품명과 권장가격은 [별첨4]로 첨부했습니다.

상품명(메뉴)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치킨류 12종 외		가격변동 시 공문발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류 등	사쿠사쿠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한 점포 (가맹점주와의 협의하에 조절가능)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사쿠사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사쿠사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98%	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 당사는 가맹점과 직영점의 전용상품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용상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사쿠사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쿠사쿠]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1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8조5항에 의거 물품공급을 받은후 3일 이내에 완납하여야한다.)	제39조제1항
2. “을”이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을”이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갑”의 품질관리기준 및 가맹점운영규칙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6. “을”이 “갑”과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을”이 “갑”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7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8. “을”이 “갑”의 영업표지, 상표 등을 허용된 범위 이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9. 본사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여 2회 경고 후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0. 신규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11. 보수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은 경우	
12. “갑”이 제공한 식재료 외 다른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13. “갑” 소속 광고모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을”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제2항
2. “을”이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①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①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행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 및 물품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가 정한 서식에 의거한 합의서 수취 및 계약서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가 정한 서식에 의거한 합의서 수취	점장의 업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사업자와 점장 간 별도 합의 필요	점장의 업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모든 지역 내에서 귀하가 사쿠사쿠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치킨류 판매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본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사쿠사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월25일	문의: 본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에 맡깁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구 분	광 고 성 격	부 담 비 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 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직전분기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직전분기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팸플렛, 전단지 등의 기획비용은 해당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하에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제작비용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부담금 확정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가맹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시행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문
○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일천만원 (₩10,000,000)을 위약금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39조제5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입지 주위 10개 점포 정보 제공 (별첨[7])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심사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D-29(1일)	8,500 (최초 가맹금, 보증금)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평당 1,430 등
감리	- 공사 완료 후 당사가 실시		없음
설비 설치	-공사 완료 후		[별첨2]참조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 시 전단지, 판촉물 등의 지원	가맹점 오픈시	오픈 일에 공급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 맹 본 부 와 가맹점사업자 협의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	



	리, 위생관리 등 가 맹점 운영 전반에 대 한 경영지도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함 된 통 상 의 경영지도 비용 을 초과한 부 분에 한함)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사쿠사쿠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가맹본부의 경영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사쿠사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및 음식 가공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시	필수교육
	점포운영규칙 숙지	강의	점포운영규칙 위반 시	필수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사쿠사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없음	보수교육 필요시
	1일	1,100	점포운영규칙 위반 시에만 비용부담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가맹계약 체결 후 30일 내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 예정일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보수교육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경기	평택효성점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155, 107호-108호(비전동, 강일타워)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4개월(1,244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170,25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1. 정 착 물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물 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3]

원· 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메뉴 및 가격

(단위: 원)

구 분	메뉴명	가격/(포장시)	비고
치킨류	매운마늘간장치킨(국내산)	14,000 /13,000	
	마늘파닭(국내산)	14,000 /14,000	
	쪽핀닭다리(국내산)	15,000 /15,000	
	쌀로만후라이드(국내산)	14,000 /14,000	
	크런치순살치킨(수입산)	15,000 /15,000	
	옛날통닭(국내산)	10,000 /9,000	
	후라이드치킨(국내산)	12,000 /11,000	
	양념치킨(국내산)	13,000 /12,000	
	마늘간장치킨(국내산)	13,000 /12,000	
	매운치킨(국내산)	13,000 /12,000	
	스모크치킨(국내산)	14,000 /14,000	
	바베큐치킨(국내산)	15,000 /15,000	
	후라이드 1/2+양념 1/2+간장 1/2세트	20,000 /20,000	
사이드 안 주	골뱅이	15,000	
	사쿠국물떡볶이	12,000	
	사쿠통오징어	12,000	
	노가리	15,000	
	대구포	15,000	
	한치	15,000	
	황도	8,000	
탕	알탕	13,000	
	짬뽕탕	13,000	
	오뎅탕	10,000	
주 류	생맥주500cc	4,000	
	생맥주2000cc	15,000	
	생맥주3000cc	22,000	
	병맥주	4,000	
	소주	5,000	
	음료수(콜라/사이다)	2,000	



[별첨 5]

사쿠사쿠 가맹점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7]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No.	가맹점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 재 지
1				
2				
3				별첨5 가맹점리스트 참조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입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현황을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 (주) 계 미 락

대 표 : 김 학 순 (인)

전화번호 : 031)665 - 4929



[별첨 8]

“사쿠사쿠”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가맹점사업자 용/ 가맹본부 용)

- 1.가맹본부명 : (주)계미락
- 2.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120100339
- 3.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2. 07. 23
- 4.정보공개서 주요 목차
 -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5.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희망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본인자필 확인	(예시) 본인은 상기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습니다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정보공개서(별첨[7]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영업비밀과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 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희망자 : 성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별첨[7]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포함)를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가 매 본 부 : 상 호 : (주)계미락 대표이사 김 학 순 (인)

전화번호 : 031)665-4929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44-1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31-665-492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